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2021. 7. 26.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1.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주요내용 및 추진경과	1
2-1.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시행계획	2
2-2.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시행계획	5
3-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계획	6
3-2.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계획	8
4. 상생 소비지원금 시행계획	9

1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주요내용 및 추진경과

1

추진 배경

- 코로나19 피해의 조기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15.7조원)*’를 포함한 2차 추경예산안 마련

* ①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①₋₁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②₋₁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②₋₂소상공인 손실보상, ③상생소비지원금

⇒ 추경 국회 심사과정을 거쳐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17.3조원(+1.6조원)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된 추경예산 국회 확정(7.24.)

2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주요 내용

- ①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맞벌이·1인 가구 등 중산층을 넓게 포괄(소득하위 80%+ α)하여 1인당 25만원 지급
- ①₋₁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
- ②₋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최대 2,000만원 지급)
- ②₋₂ (소상공인 손실보상) 향후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
- ③ (상생소비지원금) 2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月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방역상황 감안, 시행시기 조정)

3

시행계획 추진 경과

- 2차례 「2차 추경 범부처 TF 회의」(7.4, 7.8)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설계 방안과 세부 실행계획을 점검·보완
 - 3개의 개별 TF를 병행 가동하여 대상자 선정기준, 시스템 구축 방안, 집행절차 등 주요사항 논의·결정
- 추경예산 국회 확정 즉시 TF 회의 등을 통해 사업별로 구체적인 시행계획 확정

1 사업 개요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

2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선정기준

- (기본원칙)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의 “기본 선정기준표”에 표시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 지급
 - *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 6.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21.6.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특성 변경요인은 예외로 인정

<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113,600	107,600	-
2인	191,100	201,000	194,300
3인	247,000	271,400	252,300
4인	308,300	342,000	321,800
5인	380,200	420,300	414,300
6인	414,300	456,400	449,400
7인	486,200	531,900	540,200
8인	540,200	583,200	634,400
9인	634,400	661,800	816,600
10인	634,400	661,800	816,600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 적용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특례적용)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아래의 **특례 선정기준표** 적용
 - (1인 가구) 노인, 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 지급
 -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 적용
- * (예) 맞벌이인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308,300원이 아닌 380,200원이하인 경우 지급대상
-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상 인정(예 : 부부, 부+성인자녀 등)

< 국민지원금 특례 선정기준표(1인가구, 맞벌이) >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특례	143,900	136,300	-
2인 맞벌이	247,000	271,400	252,300
3인 맞벌이	308,300	342,000	321,800
4인 맞벌이	380,200	420,300	414,300
5인 맞벌이	414,300	456,400	449,400
6인 맞벌이	486,200	531,900	540,200
7인 맞벌이	540,200	583,200	634,400
8인 맞벌이	634,400	661,800	816,600
9인 맞벌이	634,400	661,800	816,600
10인 맞벌이	634,400	661,800	816,600

-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위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아래 기준에 따른 고액자산가는 대상자선정에서 적용을 제외함
 -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 *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 적용 (과세표준 9억원 ≈ 공시지가 15억원 ≈ 시가 20~22억원)
 - *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
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 13억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시)
-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19년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
 - * (예)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시 인정

□ 지급 대상

- 가구 소득 하위 80%이하,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 등을 감안 시 약 2,034만 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추정
- 추후 지급대상 명부 선정과정에서 고액자산가 배제,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등을 반영시 최종 지원대상자 규모는 변동 가능

□ 지급 규모

-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단 가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 '20년 기준 가구 비율 : 1인(38.5%), 2인(22.3%), 3인가구(17.5%), 4인 이상 가구(21.7%)

□ 재원 소요

- 11.0조원 (국비 8.6 + 지방비 2.4조원)

3 지원 절차

□ 신청 및 수령 주체

- (성인)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 (미성년자)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 지급 방식

- 온·오프라인 신청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수령('20년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시와 동일)

□ 지급 일정

- 명단확정, 조회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 등을 거쳐 8월 하순 지급 가능하나, 지급시점은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

- ◇ 현재 국회 논의로 추가된 특례 적용(1인 가구, 맞벌이) 기준을 보완한 대상자 명부 선정 작업을 진행중
- ◇ 지급시기 등을 포함한 세부 시행계획이 마련 되는대로 지급 대상자 조회 및 알림서비스 추후 일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음

1 사업 개요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

2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8월 지급시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인 경우 지원대상 → 약 296만명일 것으로 추정
 - ①기초생활수급자(234만명), ②법정 차상위계층(59만명), ③한부모가족(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 34만명) 전망

- (지원 내용) 지원대상 요건 충족시 1인당 10만원*

* 긴급복지, 한시생계 지원(1차 추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 가능

3 지원 절차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

* 계좌 정보가 없는 일부 차상위 계층 등은 별도 안내 후 지급 예정

4 향후 계획

- 시스템 개발(8월) → 지원대상자 명단(중복제외) 확정 및 지자체 통보(8월 1주) → 급여계좌로 입금(8.24일)

1 사업 개요

□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해 추가 피해지원

○ 기존 3차례 현금지원 14.1조원에 더해 총 18.3조원 수준 지원

※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현금 지원액도 최대 3,150만원+ α 로 확대

* (집합금지 혜택 예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 + 새희망자금 200 + 버팀목자금 300 + 버팀목플러스⁺ 500 + 희망회복자금 2,000 + 소상공인 손실보상 = 최대 3,150만원 + α

2 지원 내용

□ (대상·금액) ①방역수준, ②방역조치 기간, ③규모, ④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유형 세분화·맞춤형 지원 실시

○ (집합금지) '20.8.16일부터 '21.7.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 (약 20만명)

- (지원단가)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 유형별 단가: 최대 2,000만원 ~ 최소 300만원 (총 8개 구간)

○ (영업제한) '20.8.16일부터 '21.7.6일간 ①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②'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 (약 86만명)

* ①'19년-'20년, ②'19상-'20상, ③'19하-'20하, ④'19상-'21상, ⑤'20상-'21상,

⑥'20상-'20하, ⑦'19하-'20상, ⑧'20하-'21상 중 하나 이상 감소

- (지원단가)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

* 유형별 단가: 최대 900만원 ~ 최소 200만원 (총 8개 구간)

○ (경영위기)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약 72만명)

- (지원단가)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 유형별 단가: 최대 400만원 ~ 최소 50만원 (총 13개 이상 구간)

< 희망회복자금 지원 내용 >

구분		금액(만원)				물량 (만개)
		매출 ¹⁾ 4억원 이상	매출 4억 ~ 2억원	매출 2억 ~ 8천만원	매출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기 ²⁾	2,000	1,400	900	400	20
	단기 ²⁾	1,400	900	400	300	
영업 제한	장기	900	400	300	250	86
	단기	400	300	250	200	
경영 위기	△60% 이상	400	300	250	200	17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평균 50 ³⁾			55	
계		2,000~50				178

- 1) '19년 매출과 '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2) 장단기 기간 구분은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확인 후 사업공고시(8월초) 안내 예정
- 3) 국회에서 구간이 신설됨에 따라 적정단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공고시 안내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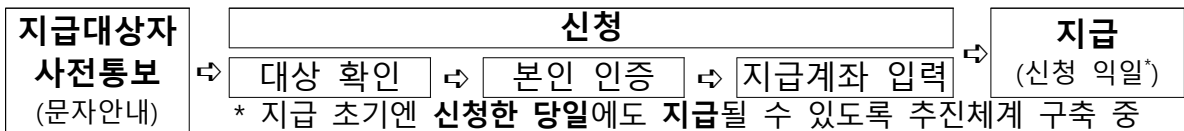
3 지원 절차 및 지급 시기

□ 사업공고 : 8월 첫주

- 개별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방역기간 및 수준 분석 등을 통해 사업공고 前 '장기-단기 기간' 등 사업 구체적 조건 확정
- ※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수사업체의 경우, 버팀목플러스 지급시와 동일하게 지급액의 최대 2배 수준까지 지원하는 방안 등 검토 (사업공고시 확정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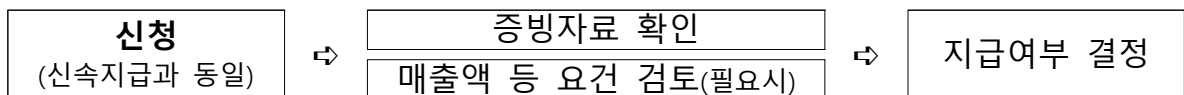
□ 신속지급 : 8.17일(화) ~

- 버팀목플러스 既지급자 등 전체 지원대상(178만명)의 약 70%인 130만명에 대해 1차 신속지급 개시
 - * 국세청 자료 연계 및 통합시스템 구축, 신속지급 DB 확정 등에 시간 소요
- '21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8월말부터 추가 신속지급 예정



□ 확인지급* : 10월 내 신청 접수

- *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협동기업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업체 등



※ 사업공고 후 상담 및 안내를 위한 콜센터 가동

1 사업 개요

-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1.7.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7.7) → 시행 (10.8)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소요 1조원 반영
→ 추가적인 소요 발생시 내년도 예산 등을 활용하여 손실을 차질 없이 보상

2 지원 내용

- (대상) 「소상공인법」 개정안* 공포일('21.7.7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법」제12조의2 ①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 (산정방식) '19년 매출을 기준으로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되,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별도 고려

※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방식 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 예정

3 지원 절차

- 통합관리시스템(온라인) 또는 지자체(오프라인)에 신청(소상공인)
→ 심사(중기부) → 심의(손실보상심의위원회) → 지급

○ 기존 행정자료(현금영수증·카드매출 등)를 최대한 활용(국세청 등과 행망 연결)하여 소상공인의 증빙자료 부담 최소화 및 보상금 신속 산정

4 향후 계획

- 법시행 당일(10.8)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 세부지침 고시 및 신청접수(10월중순~) → 보상금 지급개시(10월말~)

4

상생소비지원금 시행계획

1 사업 개요

- 코로나19로 그간 피해가 누적된 골목상권·서민경제 등으로의 소비 유도를 위해 0.7조원 규모의 「상생소비지원금」 지급 추진

2 주요 내용

- ① **(지원방식)** '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
 - ② **(시행기간)** 2개월 간 시행 (당초 정부안: 3개월)
 - * 국회 예산심의 조정 결과(1.1→0.7조원)를 반영하여 시행기간 일부 단축 (다만, 집행상황에 따라 시행기간 변동 가능)
 - ③ **(지원대상)** 개인(외국인 제외)이 보유한 모든 신용·체크카드 (법인카드 제외) 총 사용액을 기준으로 개인별 지원
 - ④ **(대상소비)** 골목상권·소상공인 등으로의 소비 유도를 위해 일부 업종·품목 사용액은 실적 산정에서 제외(네거티브 방식)
 - 백화점·대형마트(중대형 슈퍼마켓은 포함)·온라인 쇼핑몰·명품 전문매장·유흥주점 등 사용금액은 제외
 - 온라인 거래 중 '배달앱'은 국회에서 제기된 의견, 기술·행정적 측면 등을 감안하여 포함 여부를 검토 중
- ⇒ 최종 사용처는 사업 시행시기 확정 시점에 발표

- ⑤ **(지원한도)**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 (2개월 시행시 총 20만원)
- ⑥ **(지급절차)** 개인별로 지정한 전담카드사를 통해 캐시백 지급
 - 개인별 전담카드사 지정 → 개인보유 전체 신용·체크카드 월간 실적 확인 → 전담카드사에서 익월 중 캐시백 지급
 - * 개인별로 지급된 캐시백은 카드 사용시 우선 차감되도록 설계
- ⑦ **(시행시기)** 방역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확정(8월은 미시행) 할 계획이며, 시행시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 공지 예정

3 **향후 계획**

- 관계기관 합동 TF*에서 사업개시 결정시 신속히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
 - * 기재부, 행안부, 중기부, 금융위, 여신협, 카드사 등 참여
 - 7월중 사업시행 공고, 사업지침 마련 등 관련 행정절차 착수
 - 8월중 카드사 시스템 구축, 업무매뉴얼 마련 등 운영준비 마무리

< 주요 추진 일정(案) >



- 구체적인 사용처 등 세부내용과 전담카드사 지정 등 운영절차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前 별도 자료를 통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